

예술문화종합연구소규정

(제정 1995. 4.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부설 예술문화종합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학술적, 실천적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예술문화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2. 국내·외 학술회의, 세미나 및 기타 학술활동 수행
3. 국내·외 타 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적, 실천적 연구 활동 수행
4. 산·학·연과의 협동 및 연구과제 수행
5. 지역의 예술문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행사 수행
6. 지역사회에 예술, 문화 자료수집 및 자문활동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연구소 조직은 다음과 구성한다.

1. 연구소장 : 1인
2. 간 사 : 2인 이내
3. 감 사 : 3인 이내
4. 연구요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연구보조원) : 약간명
5. 연구조교 : 약간명
6. 운영위원 : 7인 이상 10인 이내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8.31.>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총무를 담당한다.
-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분과) ① 연구소에 음악, 도시환경미술, 디자인, 영상콘텐츠, 공연예술, 스포츠과학, 한지산업문화

의 7개 분과를 두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분과 설치와 폐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전문연구소) 전문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회원 5인 이상이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의 2(연구요원) ① 연구요원은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 연구보조원을 지칭한다.

② 연구소는 전임연구원과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는 연구원을 지칭하며, 연구소교수와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구분한다.

2. 전임연구원은 본교 인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전임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은 연구소장의 감독을 받는다.

4. 비전임연구원은 전임연구원이 아닌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지칭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활동 및 용역 등 연구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조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학생이상으로 소장이 과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연구기간 동안 임용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분과장 및 부장을 포함한 7~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감사 선출
7. 교원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위원 2인이상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연구소는 교비지원금과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금, 연구간접경비 징수금,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하되 연구소를 통한 모든 연구 용역비의 5%를 연구소 운영경비로 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감 사

- 제18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 ③ 감사 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 간행물 등에 공표하고 산학연구지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3-7-4 예술문화종합연구소규정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